##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00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 김석기・김도읍・윤재옥

김상훈 · 김선교 · 송언석

안철수 · 서천호 · 강대식

강선영 · 최형두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 경비업전부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임.

이에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제19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있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업무에"를 "업무(시설경비업무 중 제7조제5항단서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 ④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⑤		
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			
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다만,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		
	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		
	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			
여야 한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	2		
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u>업</u>	<u>업</u>		
<u>무에</u>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무(시설경비업무 중 제7조제5		
때	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